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박희승·정준호·한정애

김영진 • 복기왕 • 이기헌

서영교 · 김한규 · 김준혁

박홍배 • 박상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(A값)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 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. 이는 연금수급 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.

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%는 월 60만 원 미만(2024.1.말. 기준)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,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.

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.1%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,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.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(안 제63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노령연금액(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"을 "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(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3조의2(소득활동에 따른 노령	제63조의2(소득활동에 따른 노령		
연금액) 제61조에 따른 노령연	연금액)		
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			
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			
(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			
60세 미만)인 기간에는 제62조			
제2항ㆍ제4항, 제63조 및 제66			
조제3항에 따른 <u>노령연금액(부</u>	<u>노령연금액에서 다</u>		
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	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		
이 조에서 같다)에서 다음 각	을 뺀 금액(부양가족연금액은		
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	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		
<u>금액</u> 을 지급한다. 이 경우 빼는	<u>다)</u>		
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			
을 초과할 수 없다.	,		
1. 초과소득월액(노령연금 수급	<u>&lt;삭 제&gt;</u>		
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			
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			
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			
이 조에서 같다)이 100만원			
미만인 사람: 초과소득월액의			
<u>1천분의 50</u>	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